

발 간 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재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 저희 위원회 창립 이후 가장 많은 759건의 중재신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언론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각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좀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중재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였던 인터넷신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중재위원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과 중재절차로 구분하여 중재위가 실질적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분쟁을 일회적,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재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조정과 중재신청을 구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직권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국민들이 언론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목표와 정신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기본권보호라는 2개의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데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새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종국적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점을 감안, 저희 위원회는 매년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모아 「언론관계판결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반론·정정보도청구사건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운데 39건을 간추려 제12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판결집이 언론종사자들에게는 언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라잡이가 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차 례

I. 반론보도청구사례

1. 피신청인측 자료만으로는 ○○○금주학교가 수용자를 불법 감금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반론보도하라
○○○금주학교 외 1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931) 13
2.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반론이 게재되었고, 청와대브리핑을 통한 반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기3019) 18
3.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더라도 기사 전부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거나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기4999) 24
4. 신청인이 합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기6193) 30
5.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한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2433) 38

6.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하라
 ○○○주식회사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3167) 42

II. 정정보도청구사례

1. 신뢰도가 높은 취재원을 대상으로 진실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며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대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30) 48
2. 방송이 특정인의 정치적 홍보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동기의 보도로서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당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박○○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1998) 52

III. 손해배상청구사례

1. 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진위에 대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 외 19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청주지방법원 2001가합2034, 대전고등법원 2003나7034) 60
2. 변호사인 원고가 판검사에게 사건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하라

이○○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합400, 서울고등법원 2004나24047)	76
3.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기한 의혹이나 주장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5432)	103
4. 표현의 정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 광고의 게재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가 스스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지○○ 대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49152, 서울고등법원 2004나44089)	116
5. 실명을 공개했더라도 확인과정을 거쳐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다 김○○ 외 3인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한국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045, 서울고등법원 2004나49923)	125
6.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제보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 대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0506)	139
7.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피고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피고를 압박하려는데 있어 그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허용되는 권리실현 방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허○○ 대 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5498, 2004가합48190(반소))	152

8. 북한 주석이었던 김일성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촉구한 공공의 영역에 속한 보도이고, '북한을 미화했다'는 정도의 표현은 방송사 연출자들인 원고들로서 수인할 만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김○ 외 2인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598) 161

9.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가 납득하기 쉽지 않게 진행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로서 외부로부터 비판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고, 기사의 쟁점 부분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김○○ 외 9명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3인 (대법원 2002다16804) 169

10. 취재기자의 사실확인 전화에 원고측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아 더 큰 의혹을 가지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대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7254) 176

11.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국민적 관심사안을 파헤쳐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역할과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김훈 중위 타살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 외 3인 대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8887) 187

12.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사회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무분별한 땅굴탐색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은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확인 보도한 점을 감안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김○○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고등법원 2004나18059) 203

13. 원고의 설교내용을 잘못 인용하여 사실의 전제사실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담임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외 1인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2294)	208
14.	형사재판과정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수사내용을 소설화한 점 등에 비추어 소설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김○○ 대 주식회사 해우출판사 외 1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6217)	216
15.	보도의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주·월간지임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정적 문구를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주○○ 대 주식회사 SBS 외 6명 (서울고등법원 2003나55334)	226
16.	안기부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대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34985)	240
17.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아주 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으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비판한 경우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2인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7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9144)	262
18.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목적기관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의 저하 정도는 수인해야 할 것이다 이○○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3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17001)	293

19. 부정확한 사실적시나 불공정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공적 지위, 표현의 객관적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6450) 305
20. 공영방송 KBS의 공적지위에 비추어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탄핵방송과 관련하여 편파논란이 계속되어 온 점, 이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사는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3303) 319
21.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방송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김○○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2254) 325
22. 신속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취재원의 진술내용을 믿어 보도한 것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
박지원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6616) 337
23. 원고 신문사를 “파렴치한 족벌언론”, “가증스러운 신문”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9612) 349
24.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이○○ 외 11인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 (대법원 2001다28619) 371

25.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기사의 작성·편집에 간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외 1인 대 오○○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3나82497) 380

IV.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가8) 386

V. 기타사례

1. 영화속 인물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경우 영화가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여 실제 인물의 인격상을 왜곡하고 명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한 후 상영하라
박지만 대 주식회사 엠케이버팔로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106) 402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